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94

발의연월일: 2021. 3. 15.

발 의 자:권인숙·박찬대·이용우

유동수 · 김철민 · 서동용

아수진비 · 이수진 · 강민정

강득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은 교육기관 종사 자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도가 요구되며, 사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회계운영의 투명성 등 높은 수준의 공공성이 필요함.

그러나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의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라 함)이 규정하는 '공직자행동강령'에 따라 공직자로서의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달리, 이를 적용받지 않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사립학교 법인의 회계 부정에 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계 부정은 사실상 업무상 횡령,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더 엄중히 다룰 필요

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금지,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의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 강령을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의 청렴도를 제고하는 한편, 사립학교 법인의 회계 부정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 및 제72조의4 신설 등).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72조의3 및 제7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3(청렴의무)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2조의4에서 같다)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사학기관 종사자"라 한다)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다.

- 제72조의4(사학기관 행동강령) ① 제72조의3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이하 "사학기관 행동강령"이라 한다)은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 ②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 지·제한에 관한 사항
 - 가.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 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
 - 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의 정책 ·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

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 한에 관한 사항
-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신고 대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사학기관 종사자가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관할청 또는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관할청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1.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한 사학기관 행동강령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 2.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소속된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 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징계 등 의 제재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각각 제73조의2 및 제73조로 하고, 제73조(종 전의 제73조의2) 중 "2년"을 "3년"으로,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 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원"을 "교원(제4호의 경우에는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임용된 사무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2조의4제4항제2호에 따른 관할청의 시정명령을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신 설> <신 설>	제72조의3(청렴의무) 사립학교경 영자, 학교법인(법인인 사립학 교경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2조의4에서 같다)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 직원(이하 "사학기관 종사자"라 한다)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2조의4(사학기관 행동강령) ① 제72조의3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이하 "사학기관 행동강령"이라 한다)은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이하 "사학기관 행동강령"이라 한다)
	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 다.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 부터 향응·금품 등을 받는
	<u>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u> <u>항</u>

- 가.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
 자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
 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
- 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 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 지·제한에 관한 사항
-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신고 대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사학기관 종사자가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필요한 사항
- ③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 관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관할청 또는 임용권자는 징계

제73조(벌칙) (생략)

제73조의2(벌칙) 학교법인의 이사 제73조(벌칙) ------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 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제51조에 따라 준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할청은 학교법인 또는 사 립학교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 교경영자가 정관 또는 규칙으 로 정한 사학기관 행동강령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되 어 있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2.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 교에 소속된 사학기관 종사자 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하지 아니한 경우 제73조의2(벌칙) (현행 제73조와 같음)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3년-----

역 또는 <u>2천만원</u>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제74조(과태료) ① 사립학교 <u>교원</u> 의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신 설>

② ~ ⑤ (생 략)

<u>3천만원</u>
제74조(과태료) ① <u>교원</u>
(제4호의 경우에는 제70조의2제
2항에 따라 임용된 사무직원을
<u> 포함한다)</u>

- 1. ~ 3. (현행과 같음)
- 4. 제72조의4제4항제2호에 따른관할청의 시정명령을 특별한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수
- ② ~ ⑤ (현행과 같음)